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9월 17일 14시 44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급수공사 보증금 제출	3

급수공사 보증금 제출

2014.04.17 조회수 55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00
담당부서	수도행정과
상위법령	수도법 제38조
규칙	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9조
유형	3호 - 제출의무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9조(보증금) ① 대행업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써 현금 3백만원 을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 2. 27)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써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총당할 수 있다. (개정 2013. 2. 27) ③ 제2항의 경 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총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. (개정 2013. 2. 27)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 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.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.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9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01 >

Yeosu Web Contents

